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94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9.>

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지원분야	[ ]의무 [ ]법무 [ ]군종 [ ]수의	
지원자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	주소	
	학교명 또는 수련(연수)기관명	
	입학 연월일	졸업·수료예정 연월일
[ ] 동의 [ ] 부동의	의무·법무·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전담의사·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합니다.	

「병역법」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(서명 또는 인)

병무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(사진을 포함한다) 1부 2. 삭제 <2026. 10. 29.> 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4.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 1부(자격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